

■ 롯데홈쇼핑 공정거래 내부운영 규정 개정 전후 비교표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 10조 (판매수수료율 결정·변경 기준) 1. ~3 (생략)</p> <p>8. (신설) 수수료 미협의를 진행가능한 프로세스 명시</p>	<p>제 10조 (판매수수료율 결정·변경 기준) 1. ~3 (개정 전과 동일)</p> <p>8. 롯데홈은 파트너사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과 관련한 불만을 불만을 접수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며, 관련 사항에 대하여 파트너사에 충분히 사전 고지하기로 한다.</p>
<p>제 15조 (반품 관리 운영 기준) 1. ~2. (생략)</p> <p>3. (신설) 반품가능사유 및 반품가능기간 품목별 구체화</p> <p>4. (신설) 직매입거래 중 계절 집중판매상품 예시 추가</p> <p>5. (신설) 반품 프로세스 구체화</p> <p>6. (신설) 반품 프로세스 구체화</p> <p>7. (생략)</p>	<p>제 15조 (반품 관리 운영 기준) 1. ~2. (개정 전과 동일)</p> <p>3. 롯데홈은 특약매입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를 마감한 이후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파트너사와 합의한 일정 기간(예:10영업일) 이내에 반품하여야 한다. 또한 납품 받은 상품이 파트너사의 귀책사유로 오손·훼손되거나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반품 기한 내에 반품하여야 한다. (단, 신선 농·수·축산물의 경우는 2일 이내 진행하며, 거래형태 무관)</p> <p>4. 1항 6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. ① 기념일 상품 : 화이트데이 사탕, 빼빼로데이 과자, 어린이날 완구, 크리스마스 트리 등 ② 명절 상품 : 추석 선물세트, 설 선물세트, 차례용품 등 ③ 신학기/졸업시즌 용품 : 가방, 연필, 공책, 실내용, 교복, 꽃다발 등 ④ 휴가철 용품 : 수영복, 튜브 등 물놀이용품, 스키복, 고글 등 스키용품 등 ⑤ 계절 용품 : 에어컨, 제습기, 선풍기, 히터 등</p> <p>5. 4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상품의 반품은 롯데홈과 파트너사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반품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를 서면으로 미리 교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.</p> <p>6. 롯데홈이 반품을 진행하는 경우 공정거래 담당부서의 검토 및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, 파트너사에게 반품대상 상품, 수량 등을 통지하여 반품을 진행하여야 한다. (특약매입거래, 위수탁거래 제외)</p> <p>7. (개정 전과 동일)</p>

<p>제 16조 (기타 불공정 행위 기준) 1. ~2. (개정 전과 동일)</p> <p>3. (내용 추가) 상품 실제 수령거부 금지 내용 추가</p> <p>7. (신설) 경영정보요청 예외사항 명시</p> <p>8. (신설) 경영정보요청시스템 이용 프로세스 명시</p> <p>10. (신설) 일방적 편성변경 및 취소 금지내용 명시</p> <p>14. (내용 추가) 판매분매입에 대한 예외가능성 명시</p>	<p>제 16조 (기타 불공정 행위 기준) 1. ~2 (개정 전과 동일)</p> <p>3. 롯데홈은 파트너사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하기 전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·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·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, <u>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7. 롯데홈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(판촉비용 정산 근거자료, 디자인, 상표권 등의 침해 관련 소명자료를 파트너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)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, 경영정보 요청 시스템을 통하여 파트너사에게 경영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, 수령한 경영정보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기로 한다.</p> <p>8. 경영정보 요청 시 해당 부서 부문장의 전자 결재를 득하고, 시스템 내 양식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 후 발송하여야 하며 롯데홈의 정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사가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, 자료 회신을 강요할 수 없다.</p> <p>10. 롯데홈과 파트너사가 편성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합의한 경우, 편성의 변경·취소는 파트너사가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롯데홈은 어떠한 경우에도 파트너사에게 편성의 변경·취소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14.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롯데홈은 판매분 매입 형태의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---	---